#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4 발의연월일: 2020. 9.2.

발 의 자 : 김영주・박 정・안민석

김영호 · 허종식 · 임호선

윤건영 · 민형배 · 이재정

서영교 · 황운하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,390억 4,500만원이며, 이중 의무분담금은 약 54.5%인 3,458억원, 재량분담금은 약 45.5%인 2,8 90억원이고,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분산·집행되고 있음.

그런데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 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야 하며,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·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나.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 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회는 심의 결 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함(안 제5조).
- 다. 시행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,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(안 제6조).

##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 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국제기구 분담금"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. 다만,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「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)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 기구 분담금이 시행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·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
- 제5조(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)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 - 1.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
  - 2.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
  - 3.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)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현황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,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

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·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대통령에게 송부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, 자체평가결과,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